#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25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 박정하·주호영·송석준

진종오 • 한지아 • 서범수

이인선 · 이종욱 · 조은희

신성범 · 김용태 · 신동욱

조지연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과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됨.

영국, 미국 등 콘텐츠 강국들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사 한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

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8(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라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연콘텐츠가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되어 관객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연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지25조의8(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 (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조에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 공연콘텐츠가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되어
관객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u>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u> <u>서 공제한다.</u>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연콘 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